



충청남도교육청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각급학교(기관) 교육공무직원 학습휴가 부여 관련 안내

1. 관련

가.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-5313(2021. 5. 25.)호

나. 충청남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협약서 제66조제7항~제9항

2. 각급학교(기관)에 근무하고 있는 **교육공무직원의 학습휴가**(학교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 5일) 부여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**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**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**기본원칙** : 학습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**학교(기관)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재량휴업일 등의 경우에만 부여할 수 있는 휴가임**

나. 부여방침

1) 기관근무자 :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여

2) 학교근무자

- 상 시 근 무 자 :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**재량휴업일** 또는 방학기간과 같이 수업을 하지 않는 **휴업일**에만 부여 (**학기 중 재량휴업일외 학습휴가 부여 불가**)

- 방학중비근무자 : **재량휴업일 등 학기 중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날***을 지정하여 **학습휴가 부여** (원칙적으로 방학기간은 무급 휴무일로 여름방학 중 **학습휴가 부여 불가**)

* 학기 중 현장체험학습, 원격수업, 시험기간 등의 비 급식일, 학생 돌봄이 없는 날 등에 조리사(원), 초등 돌봄전담사 등 해당 직종 전체에 대하여 학습휴가 부여

• 재량휴업일에도 돌봄업무 등으로 학교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가 원칙

3) **휴가목적** : 나이스 근무상황(특별휴가 - 학습휴가)의 **사유 또는 용무란에 평생교육** (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 문자해득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교육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) **분야 학습으로 신청**

다. 그 밖의 사항

1) 재량휴업일 등 학기 중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이 적거나 **돌봄업무 수행** 등으로 **재량휴업일**에도 근무하는 **방학 중 비근무 직종**에 대한 대책은 향후 별도 안내 예정

2) 아울러,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이 **재량휴업일 등 학기 중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**에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**학습휴가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** 위 대책에서 그 일수 제외 예정

3) 사립학교에서도 공립학교 기준에 준하여 **교육공무직원의 학습휴가 부여** 협조. 끝.

본 공문은 도교육청(행정과)에서 모든 학교(기관)로 일괄 발송합니다.

충청남도교육감



수신자 도교육청부서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, 도서관, 초, 중, 고, 단설유, 특수, 각종학교

★주무관 **강찬구** 교육공무직팀장 **조권호** 행정과장 전결 2022.07.08.
명노병

협조자 노무사 **조정아** 노무사 **이애림**
시행 행정과-7060 (2022. 7. 8.) 접수 행정과-13406 (2022. 7. 8.)
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/ <http://www.cne.go.kr>
전화 041-640-8121 /전송 041-631-7965 /kcg2002@cne.go.kr / 공개